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8.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 나.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4조)
- 다. 개인정보 등의 요청·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라.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6조)
- 마. 재난수습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바. 용어, 문구 및 인용사항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6호 중 “종류”를 각각 “유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을 “구미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수습홍보”를 “수습 홍보 업무”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구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구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 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고”를 “구성할 수 있고”로, “필요한 자문을 할”을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 관련부서”를 “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관계자”를 “소속직원”으로 한다.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개인정보 등의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대응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4항 중 “배석하여 발언하게”를 “참석하도록”으로, “필요한 자문을 할”을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책본부회의”를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로 한다.

종전의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따른”을 “따른 시·도대책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중 “제7조”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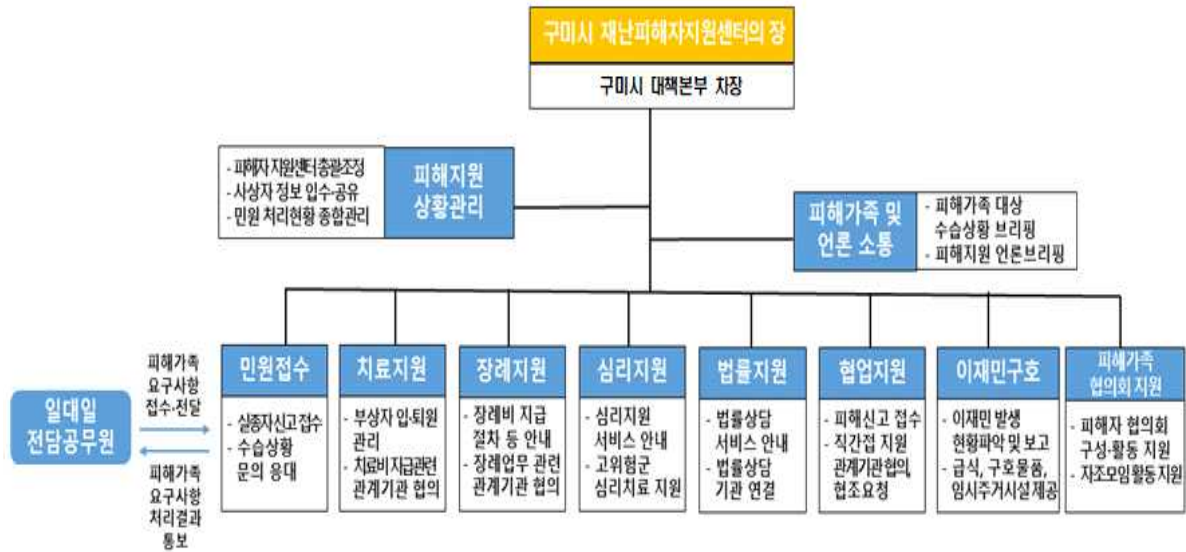
■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8조의2제4항 관련)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임무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 사항 안내
다. 민원접수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라. 치료지원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마. 장례지원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바. 심리지원	1)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사. 법률지원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아. 협업지원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자. 이재민구호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1)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 2) 배상·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미시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행정안전부	가. 시 청사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화재·위험물 사고 라.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마.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바.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안전재난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해당실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촌활력과
9. 산업통상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전략산업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정책과 상하수도사업부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로철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상하수도사업부 대중교통과 건축디자인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통신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17. 국가유산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4+ α 명	
	반 장	재난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 α) － 재난상황근무자(1+ α)
	2) 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구미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1+ α + β 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10명)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 α) - 재난상황근무자(1+ α)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 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 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 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7+α+β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16+α 명)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상황관리반(3+α) － 재난상황근무자(2+α)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 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 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 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구미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4+ α 명	
	반 장	재난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α) - 재난상황근무자(1+α)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구미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1+ α + β 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10명)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 α) － 재난상황근무자(1+ α)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 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 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 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7+ α + β 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16+ α 명)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상황관리반(3+ α) － 재난상황근무자(2+ α)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 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 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 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8+\alpha+\beta+\gamma$ 명	
	반 장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1)재난상황 총괄반 (7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4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3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구미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제50보병사단, 구미경찰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대구광역본부, 한국전력공사대구·경북본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 · 재난대응협업반 · 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6]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4 및 별표 5 관련)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가. 풍수해 (태풍·호우·대설)	1) 비상 1단계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
		2)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거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삭제
		3) 비상 3단계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거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삭제 다) 삭제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1) 비상 1단계	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다. 가뭄	1) 비상 1단계	가) 가뭄 예·경보를 통해 기상현황,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가뭄 예·경보를 통해 기상현황,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발표된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가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라. 폭염	1) 비상 1단계	가)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비상 2단계	가)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비상 3단계	가)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인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한파	1) 비상 1단계	가)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비상 2단계	가)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비상 3단계	가)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5일 이상 지속되어 한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2. 사 회 재 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생략)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통제관: 재난의 <u>종류</u> 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국장. 다만, 해당 실·국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 <u>유형</u> ----- ----- --. ----- ----- -----
6. 담당관: 재난의 <u>종류</u> 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 <u>유형</u> ----- ----- --
③ 본부장은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별표 1의2</u>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u>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u> (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③ ----- ----- ----- <u>제3조</u> ----- ----- <u>구미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u> ----- ----- ----- --. ----- -----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 7. (생략)

② (생략)

<신설>

-----.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수습 홍보 업무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구미시 재난피해자지원

센터 설치 등) ① 본부장은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
에 구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
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
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
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생략)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

1. (생략)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 5. (생략)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
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생략)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관
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
장

<신설>

<신설>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
되는 사람

--.

1. (현행과 같음)

2. -----
----- 관계
기관 근무자 -----

3. ~ 5. (현행과 같음)

③ -----
----- 구성할 수 있고-----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
-----.

1. (현행과 같음)

2. ----- 부서-----

--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
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
원부서의 장

5. -----
-- 소속직원 -----

4. (생략)

<신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소방서장. 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생략)

<신설>

<신설>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3조(개인정보 등의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대응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2. (현행과 같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생략)

③·④ (생략)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5조-----

-----.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참석하도록 -----
-----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
-----.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

-----.

⑥·⑦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 상황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삭제>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생략)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5. (생략)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신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제6항

3. ----- 따른 시·도대책
본부, -----
4. 5. (현행과 같음)
6. -----
----- 제5조-----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 ② 생략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 ④ 생략

□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8조의2 : 구미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설치·운영 여부와 세부 운영계획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비용 발생 규모와 시기를 확정할 수 없어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안전재난과 사회재난팀 이소정(☎480-6738)

소 관 부 서		안전재난과
입 안 자	과 장	권 순 모
	팀 장	박 은 주
	담 당 자	이 소 정 (480-6738)